

6) 정보제공, 이의제기

<표 6> 정보제공, 이의제기

입소후 시설생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짐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12	84	11
시설생활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할 경로가 있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20	75	12

- 시설생활에 대한 리플렛 및 안내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음
- 불만을 제기할 경로는 커녕, 시설관리자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음.

7) 생활상태

<표 7> 생활상태

생활인의 영양상태 양호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57	22	26
생활환경 청결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3	37	6
위생상태 양호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5	26	13
온난방, 통풍시설, 채광상태 구비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58	39	10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3	30	14
TV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구독 자유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3	28	15
남녀의 생활공간 분리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82	24	1
세탁, 식사준비 등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9	17	12
정원에 맞는 생활인이 생활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0	38	6
전등, 점등이 개별적, 자율적으로 가능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0	29	9

- 생활인의 영양상태, 생활환경, 위생상태, 온난방, 통풍시설, 채광상태 등 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음. 또한 적지 않은 생활인들에게서는 얼굴에 생기가 거의 없는 등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곳도 상당수 존재함.
- 한 시설의 경우는 벽면이 온통 곰팡이로 도배가 되어 있고, 9월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로 발이 시러울 정도였음.
-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에 의한 신축

시설의 경우에도 한 화장실에 두 개의 변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등 사생활 보장에 대한 개념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노동·교육

적절한 직업훈련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10	73	7
의무교육 및 기타 교육 가능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22	54	6

<표 9> 위계 관계 및 폭행·징벌·성폭행

생활인 중 중간관리자에 의한 위계체계가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3	20	13
혼합수용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6	37	3
시설운영자, 또는 생활인 상호간의 폭행, 학대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4	7	25
징벌행위 이루어지지 않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1	15	20
성추행, 성폭력 사건 발생하지 않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5	3	27

- 종사자 부족은 결국 시설관리자에 의한 생활인 중간관리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 시설의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낙태수술을 2번 받았다고 하며, 옆방의 생활인과 부부사이라고 하나, 함께 방을 쓰고 있지는 않음. 외부 남자가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여성 장애인의 방에도 자주 들어와 자고 간다고 함.

<표 10> 회계 운영

정해진 이용료 이외 과비용이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4	17	26
투명한 회계 관리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18	64	23

- 일부시설은 회계 장부가 없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장부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어 후원금, 지원금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표 11> 통신·면회·프로그램

통신기기 사용 및 서신왕래가 자유로움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6	35	6
자유로운 면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8	10	18
적절한 일상 프로그램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12	94	2

- 생활인의 연령,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일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의 시설들이 단순히 생활인의 식사 등만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법 상의 기본적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

<표 12> 장기수용, 강제입원 및 강제의료 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1년 이상 생활자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47	33	25
장기입원중인 사람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7	10	18
강제적인 의료행위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79	1	24

<표 13> 종교활동, 노역, 수급자 급여, 선거권

종교활동이 자유로움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39	61	5
생활인의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 없음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67	25	14
수급자 급여 본인 관리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14	72	12
선거시 투표권 행사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42	19	33

- 상당수의 시설들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 생활인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적게는 1주일에 2회부터 많게는 1일 4,5회까지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음. 또한 한 시설은 한밤 중인 "0"시 예배를 하는 곳도 있음.
- 거실 또는 생활인이 잠을 자는 방의 구조가 예배당의 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음.
- 상당수의 시설 생활인들은 수급자 급여를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급자 급여 관리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
- 한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생활아동 5명을 시설장의 남동생인 50대 비혼남성 수급자에게 양자로 입양시켜 수급자 급여 관리의 문제가 있음.

3.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태도

- 기초자치단체 해당 공무원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민간위원과 인권실태조사팀과의 구분을 못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 짐.
- 인권실태조사팀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적으로 인해 바빠서 실태조사일을 미루는 경우도 나타남.
- 일부 공무원은 미신고시설들과의 친분 정도가 높아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공무원은 시설 및 시설관리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음(간혹, 시설관리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와서 강력한 불만 등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함. 조사 당일에도 시설관리자가 담당 공무원의 먹살을 잡고 소리를 치는 등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함)
- 인권실태조사팀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음.

2) 민간위원들의 태도

-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민간위원 명단에는 있으나, 실제 실태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있음.
- 민간위원들에 대해 이번 미전환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4. 결론

- 짧은 조사 기간, 사전 예고된 조사(생활인 답변 준비, 시설 환경 일시 개선 등)로 인해 정확한 인권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의혹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임.
- 시설조사를 앞두고 시설폐쇄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이 폐쇄되었는지 또는 다른 지역 등에서 시설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
-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원 등의 종교시설로 둔갑하는 미신고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임.

지역사례 2. 인천지역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인천지역 미신고복지시설은 총 69개로 이 가운데 이미 신고시설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준비 중인 시설이 32곳, 요건불비, 시설폐쇄 등으로 전환이 불확실한 곳이 37곳이다.(2005. 7. 31 현재) 급변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이 없는 중구, 용진군을 제외하고 총 38개 시설 가운데 20개 시설조사를 마쳤다. 연수구, 동구의 경우 시설의 자진폐쇄 결정으로 조사가 취소됐으며, 부평구, 남구의 경우 일비 미지급의 문제로 각각 4개, 12개 시설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표1 - 각 구(군)별 조사대상 시설 분류>

구(군)	시설(수)	유형별 분류
남동구	1	노인
연수구	1	노인
계양구	5	장애인 2 / 노인 2 / 부랑인 1
남구	12	장애인
동구	1	장애인
서구	1	복합, 노인
부평구	8	장애인 5 / 노인 1 / 부랑인 2
강화군	9	장애인 1 / 노인 8
용진군		해당시설 없음
중구		
합계	38	

2) 조사진행 과정

인천지역에서 이번 실태조사에 결합한 단체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천사회복지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4개 단체이며 수시로 만남,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통해 조사를 수행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이후 일비 미지급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부평구, 남구 조사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3) 조사내용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인 1:1 면접을 통한 인권실태조사

2. 인천지역 미신고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 대부분 종교단체·기관 운영 시설, 예배 외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全無!

- 조사시설 대부분 종교단체·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생활인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예배, 기도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기본적인 혹은 열악한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 시설장의 경우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며 종사자 확보, 시설 설비요건 충족 등 현상유지만을 위해 전전하는 상황. 따라서, 생활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 시설 생활인의 연령, 장애유형을 고려한 적절한 일상 프로그램이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1	11.8
	아니다	218	83.2
	잘 모르겠다	9	3.4
	기타	1	0.4
	합계	259	98.9
무응답	3	1.1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	-
	아니다	11	84.6
	잘 모르겠다	2	15.4
	기타	-	-
	합계	13	100

(* 총 조사시설은 20곳이나 일비미지급의 문제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4곳, 자료취합 중 사정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3곳으로 빈도에 차이가 생김)

▷ 직업을 갖거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0	11.5
	아니다	146	55.7
	잘 모르겠다	21	8.0
	기타	62	23.7
	합계	259	98.9
결측	3	1.1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1	7.7
	아니다	10	76.9
	잘 모르겠다	2	15.4
	기타	-	-
	합계	13	100

▷ 종교활동 참여여부가 생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83	31.7
	아니다	142	54.2
	잘 모르겠다	33	12.6
	기타	2	0.8
	합계	260	99.2
결측	2	0.8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1	7.7
	아니다	8	61.5
	잘 모르겠다	4	30.8
	기타	--	-
	합계	13	100

-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식주 선택권, 수급자의 경우 운영편의와 실비를 이유로 생계급여를 시설에서 일괄관리 하는 등 자기결정권 보장 안 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음

▷ 신분증과 통장을 생활인 스스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41	15.6
	아니다	192	73.3
	잘 모르겠다	24	9.2
	기타	3	1.1
	합계	260	99.2
결측	2	0.8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1	7.7
	아니다	11	84.6
	잘 모르겠다	1	7.7
	기타	--	-
	합계	13	10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생활인이 직접 관리한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8	14.5
	아니다	181	69.1
	잘 모르겠다	24	9.1
	기타	17	6.5
	합계	260	99.2
결측	2	0.8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1	7.7
	아니다	11	84.6
	잘 모르겠다	1	7.7
	기타	--	-
	합계	13	100

- 13개 시설 가운데 10개 시설(76.9%)이 산간지역, 외곽에 위치해 주변에 상가 등 이용가능한 근린시설이 없는 것으로, 시설의 노후, 복도·통로의 비좁음, 계단,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5인 이하 또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주변에 이용가능한 상가 등 근린시설이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80	30.5
	아니다	176	67.2
	잘 모르겠다	5	1.9
	합계	261	
	결측	1	0.4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	23.1
	아니다	10	76.9
	잘 모르겠다	-	-
	합계	13	100

▷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건물 노후화, 화재위험, 가스설비, 대피시설 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102	30.5
	아니다	132	67.2
	잘 모르겠다	27	1.9
	합계	261	99.6
	결측	1	0.4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5	38.5
	아니다	8	61.5
	잘 모르겠다	-	-
	합계	13	100

▷ 5인 이하 규모 또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70	26.7
	아니다	190	72.5
	잘 모르겠다	1	0.4
	합계	261	99.2
	결측	1	0.4
합계	26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	23.1
	아니다	10	76.9
	잘 모르겠다	-	-
	합계	13	100

▷ 정보제공 부족

생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해 가족 등이 후원하는 현물, 물품정보, 수급자의 경우 자신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나 시설이용료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 뿐만 아니라 생활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혜택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일부 시설 사생활 침해 및 폐쇄방으로 의심되는 공간 발견

「계양구의 한 시설에서 CCTV 발견. 시설 관계자에게 설치이유 문자 예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생활인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인지 의심됨. 이후 의견서를 통해 설치사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재조사 요구했으나 특별한 답변 없었음」

「강화의 한 시설에서 폐쇄방으로 의심되는 공간이 발견. 시설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세한 설명을 꺼림. 하지만, 시설장의 거부(열쇠가 없다는 핑계를 댐)로 문을 열고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

3.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시군구의 태도

- 계양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장애가 있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복지부 추천위원회에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완곡하게 요구해 결국 수동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위원으로 교체
- 남구 역시 장애 위원이 결함하자 조사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며 일비 미지급 문제로 조사 참여 거부를 밝히자 일정을 취소하기 힘들니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단체들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복지부 추천 1인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

▷ 민간위원들의 태도

- 강화군의 경우 민간위원의 인식부족,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정조정, 생활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강화군, 부평구의 경우 민간위원의 구성이 부녀회장, 통장으로 구성됐는데 조사 배경, 취지 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함. 이런 이해 부족으로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하소연만 청취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도 함

▷ 조사 진행과정상의 문제

- 남동구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폭력, 방치의 상황이 의심돼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결과 확실한 물증이 없어 조치할 수 없다는 등 사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부평구, 남구의 경우 일비 미지급 문제로 각각 4개 시설, 12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4. 결론

▷ 성과점

- 지역에서 최초로 인천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사회복지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결합해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상황을 공유한 것은 의미가 큼

▷ 향후 과제

- 하지만 복지부 추천 1인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짧은 조사시간(평균 2시간 이내)에 비해 확인해야 할 조사내용이 너무 방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낌. 인력확보 등 보완이 필요
- 일비를 확보하지 않은 군·구는 이번 민관합동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시설공대위 내 원칙에 동의, 조사참여를 거부했으나 조사에 결합하지 못해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재조사 요구등 공동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폐쇄방 확인, CCTV 관찰 등의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 감시 필요함.

지역사례 3. 전남지역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05년 1월 현재 총 미신고시설	로또기금을 받은 곳	신고시설 전환	7월 이후 미신고시설
60	23 (38.3%)	22 (36.7%)	15 (25%)

- 총 15개 시설 중 6개 시설 조사 : 노인시설 4곳, 아동시설 1곳, 장애인시설 1곳

2) 조사진행 과정

- 조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
- 민간조사 위원 참여단체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진행

3) 조사내용

시설의구분	조건부시설(0)	미신고시설(6)	
시설의 종류	노인시설(4)	아동시설(1)	장애인시설(1)
시설의 이용형태	실비시설(1)	혼합시설(5)	

조사표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가족운영 주로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	4	2	0
시설에 적절한 종사자가 있다.(자격기준, 종사자수, 근무여부)	0	6	0
운영위원회 시설운영에 생활인 참여 보장 등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0	6	4
입소과정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0	5	1
당사자 의사에 따라 퇴소가 자유롭다.	0	5	1
신분증과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3	2
머리의복 의복 및 머리모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4	2	0
5인 이하 규모 또는 그룹 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	2	0
시설구조가 복도식이 아닌 일반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2	3	1
시설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가 및 근린시설이 있다.	1	5	0

낙인감 시설외부에 낙인감을 주는 이름 또는 간판이 없으며, 일반 주거환경에 가깝다.	4	2	0
담장철망 위화감을 주는 높은 담이나 철망이 없다.	5	1	0
입출입 생활인이 시설경계 내외로 입출이 자유롭다.	3	1	2
타인출입 타인이 시설 내부로 진입이 자유롭다.	4	1	1
입출을 감시하는 종사자나 자물쇠 등 시설물이 없다.	4	2	0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화재, 노화, 가스, 대피시설)	2	4	0
생활거주공간에 외부잠금장치 및 쇠창살이 없다.	5	1	0
징벌방과 같은 폐쇄공간이 없다.	4	0	2
화장실 세면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은 폐쇄형으로 사생활이 보장된다.	4	1	1
감시장치 CCTV등 감시를 위한 설비가 없다.	5	0	1
입소후 생활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	6	0
생활인이 시설생활에 불만 등을 제기할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0	6	0
생활인의 영양상태가 양호하다.	1	5	0
생활환경이 청결하다.	2	3	0
생활인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2	4	0
온난방 온난방, 통풍, 채광시설 등 구비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2	3	0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2	2
TV시청, 라디오, 신문구독 등이 자유롭다.	3	3	0
남여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침실, 화장실, 목욕시설)	4	2	0
세탁, 식사준비 등 운영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4	1	1
시설규모에 맞는 생활인이 생활중이다.	2	4	0
점등자율 생활공간의 점등이 개별적 자율적이다.	2	2	1
직업을 갖거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1	4	0기타(1)
학령기 생활인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교육을 받는 생활인이 있다.	1	3	0기타(1)
중간관리 총장실 방실장 등 생활자중 중간관리자등 위계체계가 없다.	3	2	1
알콜릭 약물중독 출소자 정신질환 정신지체인 아동등 혼합수용하고 있지 않다.	1	2	3
시설운영자 또는 생활인 상호간에 폭행 및 학대가 없다.	4	1	1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2	2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4	1	1
정해진 이용료 이외 입소시 지참금 등 과외비용이 없다.	4	0	2
장부기재 등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4	1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 사용 및 서신왕래가 자유롭다.	1	4	1
가족과 지인 등의 면회시 감시등이 없이 자유롭다.	4	0	2
생활인의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다.	0	6	0
퇴소를 원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자가 없다.	2	2	2
장기입원 장기입원 중인 사람이 없다.	3	1	2
약물복용등 강제적인 의료행위가 없다.	4	1	1
종교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다.	1	3	2
생활자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없다.	3	2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본인이 관리한다.	1	3	2
생활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한다.	4	0	1기타(1)

< 위 조사표 내용 참고 >

각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위 조사표의 내용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남지역의 경우 2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설장과 시설장의 처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이 신고시설로의 전환의지가 매우 확고하여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몇 개의 시설의 경우 신고시설의 전환의지가 불분명하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종교시설의 의지가 더 강하였고 다소 비 협조적임을 볼 수 있었다.

몇몇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강요에 의한 노동의 흔적은 없었으나 생활인 스스로가 원해 소일거리 삼아 조그마한 경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설 입소 전부터 항상 소일거리를 찾아 하였고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픈 거 같아 스스로 찾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동력 착취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소일거리를 찾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S'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 면담시 종교적 색채가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 후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 알아본 결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운영되어 지는 곳이었으며 유급 직원의 급여 지급 부분 또한 현금과 현물이 절반 씩 지급되어 진다고 한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합동농장 형태로 경작하여 납품하는 생산단지 안에 시설이 존재하여 생활인들의 노동 여부가 의심이 되었

으나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 달리 조취 할 방법이 없었다. 생활인의 면담 시 대부분이 스스로 원해서 입소하였기에 몇몇의 이상한 점이 있었으나 양성화 하여 꾸준히 감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조사 후 종합의견 >

생활실태 및 인권에 문제있음	4	행정처분 불필요	1
일부경미한 사항에 문제 있으나 재발위험 없음	0	행정처분 경고	1
생활실태 및 인권실태 문제 없음	1	전원조치	1
행정처분 불필요	1	시설폐쇄	4

2. 전남지역 미신고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노인시설 4곳, 아동시설 1곳, 장애인시설 1곳으로 총 6개의 시설을 조사하였는데 노인시설의 경우 면담 시 대부분의 생활인들이 무연고에 오갈대가 없어 보살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시설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 중 몇몇 생활인들의 경우 간식, 식사 등의 사적인 취향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이유는 한두사람이 아닌데 의견이 반영되어지기가 힘들고 그렇게 의견을 말함으로써 더욱 번거롭고 불편하게 해 주는거 같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곳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급비가 운영비의 80% 정도를 차지하였고 수급 여부에 대해 생활인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었다. 폭력이나 폭행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한 시설의 경우 치매 노인의 방 밖에 자물쇠를 두어 외출을 강제하고 있었고 시설장이 없을 시 방장이 존재하여 감시하는 등의 문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인 대해 매우 열악한 환경과 위급 시 연락을 취할 방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시설의 경우는 40여명이 넘는 아동들이 매우 좁은 공간에서 남녀로 나뉘어 취침을 하였고 시설장과 한명의 직원이 아동을 돌봄으로써 위계질서가 매우 강하게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살~14살 사이의 아동들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새벽 예배를 매일 보고 있었으며 징벌 등이 존재하였다. 아동들의 입소 과정에 있어 아동들 스스로가 입소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절하지 못하였고 입소 시 양육포기 각서를 받는 걸 알 수 있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매우 가족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몇 달 전 시설장이 사망하여 현재 공석인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회계정리에 있어 중단된 상태였으나 새로운 시설장을 구하는 중이라 하였다. 시설의 위치가 마을의 입구에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시설 사례>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매우 밝은 모습의 생활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시설장에게 시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신고시설 전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며 생활인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여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있어 허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폭력이나 폭행 부분의 문제는 없었으나 직원이 적어 생활인 중 다소 건강한 분이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 빨래 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급 여부에 대해 생활인들이 알고 있었으며 입소 시 필요가 없어 시설장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시설장은 아침저녁으로 하는 가족회의에서 치매 노인의 경우 자꾸 잊어 버려 회의를 거쳐 관리한다고 하였다.

<'ㅎ'시설 사례>

시설장의 신고시설 전환의지가 전무하였고 처음부터 종교시설이라 하였다. 그러나 생활인의 수가 40여명이 넘었고 이들이 아직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기에 그에 맞는 보호는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40여명의 생활인을 2명이 보호하여 외출에 대해 강제를 받았고 강제적 종교행위(새벽기도 등)도 있었고 남녀로만 구분되어 한꺼번에 취침을 하고 있었다. 잘못을 했을 시 가혹한 징벌이(손바닥, 발바닥, 머리 박기, 몽둥이로 맞는 등) 행해졌으며 한 생활인의 경우 땅을 판 후 무엇인가를 묻었다고 하였다. 어떠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근처 초등학교에서 생활인이 구타당해졌으나 그 자원봉사자가 현재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시설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다. 시설 안에 생활인이 취침을 하는 방외에 잠겨 있는 방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처음 입소 과정에서의 문제도 볼 수 있었다. 입소 시 부모로부터 양육포기각서를 공증하여 받았고 생활인의 의지의 판단이 3번 이상 시설을 찾아와 울지 않으면 입소되어 진다라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입소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소되어진 생활인의 경우 전혀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었고 가족의 연락 또한 받을 수 없었다.

3.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의 행정처분 절차에 보면 민관합동 실태조사팀을 9월 1일까지 구성하여 9월~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었다. 전남 시군구 대부분의 경우가 9월 말이 지나고 10월이 되어서야 연락을 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더 심한 곳은 전남 지역을 맡고 있던 연구소에서 연락을 취한 후 부랴부랴 실태조사팀을 마련하여 10월 26일을 시작으로 11월 초에 걸쳐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담당자조차 이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하였고 복지부추천 위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부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팀의 구성원들 또한 이 조사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일 30분 전 간단한 설명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조사 시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기초 자료 등 시설 조사 시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전환 시설 의지가 분명하고 많은 부분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으나 몇몇 종교적 신념에 의해 하는 곳은 전환 시설 여부가 매우 불분명 하였으며 종교시설이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구의 태도, 민간위원들이 태도, 조사의 진행과정상의 문제(시군구의 연락시기와 추진과정) 등 기술

4. 결론

최초의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들을 그냥 넘기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일선의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기까지 공무원 조직에서의 상하전달은 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한 숙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사를 다소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미친 것을 볼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조차 조사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해 기간에 맞추어 늦게나마 형식을 취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런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관실태조사팀 또한 구성원간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지지 않아 조사 위원들의 역할 등이 다소 불분명하고 조사 위원들의 조사의지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조사 시 시설장의 신고시설 전환의지가 강할수록 협조가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미리 시간을 정하고 조사를 하였기에 생활인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조사 시간이 다소 짧아 생활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종교시설로 남겠다고 하였으나 40여명의 생활인을 받고 대부분의 생활인들이 수급비로 등록되어 운영비로 쓰여 지는 등 인권의 침해 요소는 다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강압적으로 폐쇄가 되어 생활인들이 더 나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되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미신고 시설이 적음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미신고 시설이 제대로 조사되어 졌는지가 크게 궁금하였다. 차후 이러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면 형식적이 아닌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지한 후 민관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역사례 4. 부산경남지역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부산 26개 시설 중 9개소 조사
- 경남 40개 시설 중 10개소 조사(1개소는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민원제기로 실시)

2) 조사진행 과정

- 10/6 - 부산 사하구
- 10/13 - 부산 사상구 2개소, 부산 북구
- 10/18 - 부산 금정구 3개소
- 10/22 - 부산 서구, 경남 창원군 2개소
- 10/23 - 경남 산청군
- 10/25 - 경남 창원시
- 10/27 - 경남 의령군, 밀양시
- 10/28 - 경남 진해시, 함안군 2개소, 부산 해운대구

3) 조사내용 : 전체적인 문제점

-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무허가 건물도 상당수 있어 생활시설로 대부분 부적합
- 시설장 등 운영주체가 대부분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영상의 개방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입, 퇴소 시 절차상 서류가 하나도 없음
- 수입, 지출 등 회계 상의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음
- 생활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대부분 방치 상태에 있음
- 복지차원의 시설운영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음

2. 부산·경남지역 미신고 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1) 시설운영의 민주성·개방성

- 주로 가족에 의해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종사자는 거의 없으며, 시설을 개방하거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2) 자기결정권 존중

- 입, 퇴소과정에서 본인 의사보다는 가족의 일방적인 결정이 많으며, 시설 입소 후 가족

과의 관계가 대부분 단절된 상태임

- 수급자의 경우 통장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3) 주거시설로의 적절성

- 강제적인 철망이나 담은 없지만 대부분 주거시설로는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미비하여 주거 시설로는 부적합

4) 입출가능 여부

- 표면적으로 입출입이 자유로우나 가출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일부 통제가 있는 시설도 있음

5) 생활공간

- 강제수용의 형태를 띠는 시설은 없으나, 각종 사고 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시설이 많음

6) 정보제공, 이의제공

- 시설생활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으며, 이의제기는 불가능해 보임

7) 생활상태

-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는 않지만, 사생활 보장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

8) 노동, 교육

- 시설이나 외부의 도움 등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임

9) 위계관계

- 대부분 특별한 위계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나, 시설장 및 그 가족에 대한 위계는 철저해 보임. 경남 의령군의 시설에서는 시설장 이하 생활인의 위계관계도 존재

10) 폭행, 징벌

- 거의 없으나 경남 의령군은 일부 제재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성폭행

- 파악된 바 없음

12) 회계운영

- 조사대상 모든 시설이 회계장부 및 수입, 지출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투명하지 못하며, 통장관리 또한 시설장이 관리하는 데가 많음.
- 그 외,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이득을 보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보임

13) 통신, 면회

- 통신이나 면회는 자유로우나 생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어 보임

14)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시설은 없으며, 소일 정도이며 방치된 상태에 가까움

15) 장기수용

- 인원의 변동이 많으며, 대부분 3-4년 이상의 장기수용이 많음. 심지어 10년 이상의 생활인도 있음

16) 강제입원 및 강제의료행위

- 강제의료 행위는 없으나 입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보임

17) 종교활동

- 종교기관 및 종교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강요라 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종교활동이 이루어져 생활인들 모두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18) 노역

- 강제적인 노역은 없으나 경남 의령군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화장지 판매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19) 수급자 급여

- 생활인이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 거의 없으며, 자신이 수급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20) 선거권

- 선거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거의 없음

3.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시군구의 태도

- 지역의 미신고시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자체를 매우 꺼려하며,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하는 식의 형식적인 면이 일부 보임, 하지만 부산 사하구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차 조사까지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었음.

2) 민간위원들의 태도

- 기관, 시설, 단체에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같은 입장이라 일부 형식적인 조사가 보임, 또 일부 조사위원은 미신고 시설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조사위원도 있었음.

3) 진행상의 문제

- 대부분 조사에 미진한 태도를 보여 10월 마지막 주에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 또한 성의 없는 태도로 기초 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한 태도 있었음.

4. 결론

- 이번 조사를 하면서 '시설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서, 대부분의 운영자들의 입장은 동정, 시혜, 자선의 입장이거나, 복지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적 측면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의 '시설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이번 조사와 같이 다분히 위화감, 거부감을 조성하는 방법보다는 교육, 홍보, 캠페인과 같은 방법, 또는 그들의 요구나 시설이 올바른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 등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 '시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사례 5. 대구경북지역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총 19개 시설 중 17개 시설 조사완료)

① 대구지역 : 2005년 1월 기준 총 15개의 조건부시설 가운데, 3개 시설 조사
(미신고시설 없음)

지역별 조건부 시설 수	중구(2)	동구(1)	남구(2)	북구(1)	수성구(2)	달서구(4)	달성군(3)
로또기금 받은 곳			1		1		1
조사완료 시설		1			1	1	

※ 대구지역에는 확인된 미신고시설이 없었으며, 조건부 시설 중 담당 공무원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 3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지역별 조건부 시설 수치는 2005년 1월 기준임.
※ 2005년 9월자로 대구광역시청을 통해 확인된 조사대상 시설 3곳에 대해 조사 완료함.

② 경북지역 : 2005년 1월 기준 총 55개 시설(조건부, 미신고 시설 모두 포함) 가운데 11개 미신고복지시설과 이후 추가 확인된 6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미신고 시설 중, 조건부시설 3개를 포함하여 14개 시설을 조사함.

지역명	조건부 시설	미신고 시설	로또기금 받은 곳	조사완료 시설
포항(7)		7		7(미)
경주(5)	5			
김천(4)	3	1		1(조)/1(미)
안동(7)	6	1	1(조건부시설)	
구미(4)	4			
영주(3)	3		2(조건부시설)	
영천(1)	1			
상주(6)	4	2	2(조건부시설)	1(조)/1(미)
문경(3)	3		1(조건부시설)	
경산(1)		1		1(미)
군위(1)	1			
의성(4)	4		1(조건부시설)	1(조)
청송(3)	2	1		
청도(6)	5	1		
고령(1)	1			
성주(1)	1			
칠곡(2)		2		
울릉(1)	1			
영양(1)		1		1(미)

- ※ 표의 지역별 시설 수는 2005년 1월자로 확인된 시설과 2005년 9월자로 확인된 시설 수를 합산한 것임.
- ※ 표의 미신고 시설 중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주(1), 청송(1), 청도(1), 칠곡(2) 등은 2005년 9월 경북도청을 통해 확인된 조사대상 목록에서 제외됨.
- ※ 경북도청을 통해 확인된 조사대상 중 안동 1곳과 의성 1곳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조사완료함.
- ※ 안동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하였음.
- ※ 의성의 경우, 사전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조사진행 과정

① 조사기간 : 2005년 10월 7일 ~ 11월 11일

② 참여단체 : 대구DPI,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3) 조사내용 : 민간단체 공동으로 작성한 "미신고복지시설 생활 및 인권상황 조사표"에 준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함.

2. 대구경북지역 미신고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 조사완료 시설 중 17개소에 대한 생활인 인권실태 개요

1) 시설운영의 민주성·개방성

- 조사대상 시설 중 8개소(47%)가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한 종사자 수를 갖추고 있는 시설은 3개소(19%),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 생활인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해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은 1개소 등이었음. 전반적으로 시설의 운영은 시설장 혹은 소수 관계자의 판단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자기결정권의 존중

- 생활인들이 치매노인 혹은 정신지체, 아동 등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 가족 등에 의해 입소와 퇴소가 결정되고 있으며(25~50%), 당사자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제도나 조치가 부재함.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상대적으로 존중되는 편이나(69%), 신분증과 통장 등에 관한 관리는 대부분 시설 측 혹은 소수가 가족이 대신하고 있음(81%).

3) 주거시설로의 적절성

- 그룹홈 형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일반주택의 형태로 특별한 위화감을 주는 높은 담이나 철망은 없었음(단, 치매노인 시설의 경우 예외). 조사대상의 50% 정도가 간판을 부착하고 있었으나 그 크기가 작은 편임.

4) 입출가능 여부

- 시설의 위치 자체가 마을과 떨어져 있거나 치매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출입은 자유로운 편이었음. 일부 장애인 시설의 경우 종사자 혹은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외출을 하고 있음.

5) 생활공간

- 생활자 거주 시설에 대한 외부 장금장치나 쇠창살, 징벌방 등이 거의 없었으며, 별도로 생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설비(CCTV 등)는 없었음. 단, 50%에 달하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화재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 특히, 상주에 소재한 '하늘지기'의 경우 판넬 형태의 임시 가건물로서 현장에 나갔던 모든 조사원들 모두 화재 등 안전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함.

6) 정보제공, 이의제기

- 별도의 정보제공이나 이의 제기 통로가 거의 부재함.

7) 생활상태

- 생활인의 영양상태나 의료조치 등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50~60%의 만족도를 가짐.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의 청결과 생활인의 위생상태의 양호 정도는 75~81%에 달함. 시설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8) 노동·교육

- 학령기 생활인 시설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업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 위계관계

- 31%에 달하는 시설에서 총실장, 방실장 등 생활인 중 중간관리자가 있었음. 특히 아동 시설의 경우(초등~고등) 대부분 고등학생이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규칙을 어겼을 경우 해당 생활인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있음.

10) 폭행·징벌

-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약 31% 시설에서 생활자 상호간의 폭행 및 학대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파악된 사례에서는 규칙위반 등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했음.

11) 성폭행 여부

- 생활인과 담당 공무원 등 조사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해, 확인된 성폭행 사례는 없었음.

12) 회계 운영

- 장부 자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아 대체로 회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의성군에 소재한 '사랑의 집' 경우에는 회계장부 요청에 시설장이 욕설을 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함.

13) 통신·면회

- 통신과 면회에 있어 강제적인 제한 조치는 확인된 바 없으나, 설비의 부족이나 생활인 자체 능력의 결핍 등으로 30%정도는 충분한 통신이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음.

14)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전무함. 일부 의욕자체가 없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15) 장기수용

- 생활인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 아동 등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이나 시설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 수용되고 있는 경우는 50% 정도임.

16) 강제입원 및 강제의료 행위

- 강제적 장기입원이나 약물복용 등 강제적인 의료행위는 거의 없었음.

17) 종교활동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으로 판되는 시설은 31%정도임.

18) 노역

- 확인된 바로는 생활자에 대한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는 없었음.

19) 수급자 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생활인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38% 정도임. 나머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관리하고 있음.

20) 선거권

- 선거권이 있는 생활인 시설의 경우 대부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3.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조사대상 시설의 목록작성이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청이나 경북도청은 각 지역에서 제출한 목록을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목록 자체에 대한 점검 절차가 거의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안동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사의 필요성이나 조사의 의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사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해당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행정기관 전체 차원의 사업에 대한 교육과 인지의 과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번 민관합동조사의 경우, 민간단체 참여 여부가 너무나 임박하게 결정되어 민간단체

자체 조사원의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4. 결론

- 직접 현장에 나갔던 조사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과는 별도로 시설에 대한 조사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복지분야 행정이 거의 전적으로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
- 특히나, 열성적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차원의 시설 기준에 준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인권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더하여, 이미 전환된 시설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정책 전반에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민간단체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봄.

지역사례 6. 서울지역

1. 조사 개요

1) 서울시 미신고시설 현황과 민관합동조사 현황

○ 2005년 1월 기준으로 조사된 서울지역의 미신고시설(조건부시설을 포함)과 2004년말 로또기금 지원대상인 시설을 각 구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즉 서울시에 있는 미신고시설은 총 123개이며, 이중 로또기금의 지원을 받은 시설은 22개로, 이 시설들은 2005년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지원받은 시설이다.

연번	시군구	구별 미신고시설 수	로또기금 지원받은 시설 수	민관합동 조사 실시 시설 수
1	종로구	6	0	-
2	용산구	6	1	-
3	성동구	1	1	-
4	광진구	5	2	-
5	동대문구	3	0	-
6	중랑구	1	0	-
7	성북구	8	0	4
8	강북구	7	1	2
9	도봉구	4	1	-
10	노원구	1	0	1
11	은평구	14	2	-
12	서대문구	2	0	-
13	마포구	5	1	-
14	양천구	4	0	-
15	강서구	10	2	-
16	구로구	9	1	4
17	금천구	1	1	-
18	영등포	4	0	-
19	동작구	1	1	-
20	관악구	8	0	1
21	서초구	3	2	2
22	송파구	13	2	5
23	강동구	7	4	-
총계		123	22	19

[표 1] 서울시 구별 미신고시설현황(2005.1기준)과 민관합동조사 현황

○ 따라서, 서울시의 미신고시설 총 123개(2005.1기준)의 시설 중 로또기금을 지원받은 시설 22개가 신고시설로 100%전환했다 하더라도,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시설수는 고작 19개에 불과해 약 100개의 미신고시설들이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의 시설중 자체 전환이 가능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관합동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조사를 간 구라 하더라도 구청 담당자가 조사대상을 임의로 축소하여 일부의 시설에만 조사를 가는 문제점도 있었다.

○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2005.7.26일자)를 통해 서울시의 138개의 미신고시설중 이미 전환을 완료한 시설을 27개, 전환이 확실하다고 예정하는 시설이 30개, 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이 52개, 시설폐쇄가 예상되는 시설이 14개인 것으로 밝혔다. 이것에 근거해 보더라도 적어도 전환불확실시설(52개)과 시설폐쇄시설(14개), 즉 적어도 총 66개에 대한 시설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9개(28.8%)만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나 은평구와 강서구 같이 서울지역내에서 미신고시설의 밀집지역이라 할수 있는 구에서는 조사하자는 연락조차 오지 않아 서울시가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계	기전환1	전환확실2			전환불확실3		시설폐쇄4		전환율 (1+2+4/총계)
			①절차 진행중	②공사 진행중	③계약 체결중	①요건 완비	②요건 불비	①자진 폐쇄	②강제 폐쇄	
총계 (비율)	1,288 (100%)	213 (16.5%)	172 (13.4%)	279 (21.7%)	135 (10.5%)	30 (2.3%)	357 (27.7%)	95 (7.4%)	7 (0.5%)	70.0 %
서울	138	27	21	15	9	6	46	10	4	62.3 %

[표 2] 2005.7.26일자 복지부 보도자료

2) 민관합동 조사 개요

○ 민관합동 조사는 총 19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서울지역은 주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이하 '시설공대위')와 지역 복지운동단체인 광진주민센터와 위례복지센터가 참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성북구	4	노들장애인야학
2	강북구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3	노원구	1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4	구로구	4	광진주민센터,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5	관악구	1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6	서초구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7	송파구	5	위례복지센터
총계		19	

[표 3] 서울지역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단체

○ 조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구청 담당자와 구청에서 선정한 민간위원 2인, 복지부가 추천한 민간위원인 시설공대위 등의 단체가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시설 총 19개중 구로구의 2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시설의 구분, 종류, 이용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조건부시설은 5개인데 반해 미신고시설이 12개로 두배이상 많았고, 주로 노인생활시설 14개(82.3%)로 가장 많았다. 또 이용형태로는 실비시설이 9개((53.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거주 노인들이 결국 실비수준의 미신고시설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로 볼수 있다.

서울시	시설의 구분		전체
	조건부시설	미신고시설	
	5	12	17

[표 4] 조사대상 시설의 구분

서울시	시설의 종류						전체
	아동보호 시설	노인생활 시설	장애인생활 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 시설	기타시설	
	1	14	1	1	0	0	17

[표 5] 조사대상 시설의 종류

서울시	시설의 이용형태				전체
	무료	유료	실비	혼합	
	1	3	9	4	17

[표 6] 조사대상 시설의 이용형태

2. 서울시 미신고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1) 시설 운영의 민주성·개방성

	빈도	퍼센트
그렇다	9	52.9
아니다	8	47.1
합계	17	100.0

[표 7] 가족운영 주로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5	29.4
아니다	12	70.6
합계	17	100.0

[표 8] 종사자 시설에 적절한 종사자가 있다.

	빈도	퍼센트
아니다	11	64.7
잘 모르겠다	6	35.3
합계	17	100.0

[표 9] 개방성 운영위원회 시설운영에 생활인 참여 보장등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 총 17개 시설중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곳이 9개,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8개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시설운영이 가족과 친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격있는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곳은 5개, 아닌곳은 12개로 나타나 복지시설로 볼수 없는 시설이 7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위원회 등 생활인들의 참여보장 등이 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11개(64.7%)의 시설이 운영위원회등 참여보장을 위한 구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자기 결정권 존중

	빈도	퍼센트
그렇다	6	35.3
아니다	8	47.1
잘 모르겠다	3	17.6
합계	17	100.0

[표 10] 입소절차 입소과정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9	52.9
아니다	6	35.3
잘 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표 11] 퇴소절차 당사자 의사에 따라 퇴소가 자유롭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2	11.8
아니다	14	82.4
잘 모르겠다	1	5.9
합계	17	100.0

[표 12] 신분증 신분증과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7	41.2
아니다	5	29.4
잘 모르겠다	5	29.4
합계	17	100.0

[표 13] 머리의복 의복 및 머리모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자기결정권 존중에 있어서는 입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35.3%, 보장되지 않는 곳이 47.1%로 나타났다. 또한 퇴소의 자유에 있어서도 52.9%가 보장된다고 답했으며, 35.3%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해 입퇴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 약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입퇴소의 자유, 즉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자유 의 권리조차도 복지시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 또한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등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11.8%에 불과하고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82.4%나 되어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를 보여준다.

3) 주거 시설로의 적절성

	빈도	퍼센트
그렇다	6	35.3
아니다	11	64.7
합계	17	100.0

[표 14] 그룹홈 5인이하 규모 또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3	76.5
아니다	4	23.5
합계	17	100.0

[표 15] 내부구조 시설구조가 복도식이 아닌 일반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2	70.6
아니다	4	23.5
잘 모르겠다	1	5.9
합계	17	100.0

[표 16] 낙인감 시설외부에 낙인감을 주는 이름 또는 간판이 없으며, 일반 주거환경에 가깝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4	82.4
아니다	2	11.8
잘 모르겠다	1	5.9
합계	17	100.0

[표 17] 담장철망 위화감을 주는 높은 담이나 철망이 없다.

○ 주거시설로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그룹홈형태와 유사한 것은 35.3%에 불과하였으나, 일반주택과 유사한 형태는 76.5%로 서울시내에 있는 시설인만큼 주택과 유사한 형태가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근린시설이 없는 곳이 64.7%나 되었다.

4) 생활공간

	빈도	퍼센트
그렇다	6	35.3
아니다	9	52.9
잘 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표 18] 시설안전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화재, 노화, 가스, 대피시설)

○ 서울시의 복지시설의 경우, 타지역보다 생활공간 등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17개중 35.3%만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나타났고, 52.9%가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생활상태

	빈도	퍼센트
그렇다	12	70.6
아니다	3	17.6
잘 모르겠다	15	88.2
무응답	2	11.8
합계	17	100.0

[표 19]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결하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6	35.3
아니다	9	52.9
잘 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표 20] 온난방 온난방, 통풍, 채광시설 등 구비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2	70.6
아니다	4	23.5
잘 모르겠다	1	5.9
합계	17	100.0

[표 21] 의료조치 질병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1	64.7
아니다	6	35.3
잘 모르겠다	17	100.0

[표 22] 생활공간 남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침실, 화장실, 목욕시설)

	빈도	퍼센트
그렇다	10	58.8
아니다	4	23.5
잘 모르겠다	3	17.6
합계	17	100.0

[표 23] 적정규모 시설규모에 맞는 생활인이 생활중이다.

○ 생활상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청결상태나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난방, 채광, 통풍 등은 52.9%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조사를 가기전에 시설

측에 대부분 연락을 하고 가기 때문에 평상시의 시설환경과 생활인들의 청결상태 등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남녀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 35.3%나 되어 생활인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존중되지 않음을 볼수 있다.

○ 서울지역은 의료적 자원이 풍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23.5%나 되어, 이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등 공적 의료체계속에서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겠다.

6) 프로그램, 장기수용여부, 종교강요 여부 등

		빈도	퍼센트
내용	그렇다	1	5.9
	아니다	14	82.4
	잘 모르겠다	1	5.9
	합계	16	94.1
	무응답	1	5.9
합계		17	100.0

[표 24] 프로그램 생활인의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다.

○ 대부분의 시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생활인들에게 기초적인 의식주 제공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혀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의 시설은 강요된 종교활동이 프로그램의 전부인 곳도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 '수용'차원의 저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수 있다. 아래표에 의하면 종교활동의 보장이 자유로운 곳은 29.4%, 자유롭지 않은 곳이 58.8%나 되었다.

		빈도	퍼센트
내용	그렇다	5	29.4
	아니다	10	58.8
	잘 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표 25] 종교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다.

		빈도	퍼센트
내용	그렇다	9	52.9
	아니다	8	47.1
	합계	17	100.0

[표 26] 퇴소를 원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자가 없다.

○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장기수용된 생활인이 있는 곳이 52.9%나 되어 앞의 입퇴소의 자율권이 없는데다가 장기수용까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도	퍼센트
내용	그렇다	3	17.6
	아니다	12	70.6
	잘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표 27] 수급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본인이 관리한다.

○ 앞서 자기결정권 보장에서 보여지 듯이 수급권 통장 등을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곳이 70.6%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종합의견 및 행정처분 내용

		빈도	퍼센트
내용	1.00 생활실태 및 인권상태 문제있음	8	47.1
	2.00 일부경미한 사항에 문제 있으나 시정가능 재발위험 없음	6	35.3
	3.00 생활실태 및 인권상태 문제없음	3	17.6
	합계	17	100.0

[표 28] 종합의견

○ 문제가 있는 시설이 47.1%, 경미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 35.3%, 문제가 없는 시설이 17.6%에 불과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미신고복지시설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빈도	퍼센트
내용	행정처분 불필요		2
	행정처분 필요	경고 조치	5
		전원 조치	3
		시설폐쇄	5
		고발	0
		기타	4
	합계		19

[표 29]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필요의 응답은 복수응답)

○ 따라서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시설은 2개 뿐이며, 나머지 15개의 시설은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의 의견도 00%나 되어 이는 서울시의 미신고시설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준다.

3. 조사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

1)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복지부 지침에 대한 몰이해

○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2005.5)』을 발표하여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계획을 각 시군구에 하달하고, 이에 대한 시군구담당자 교육을 2005년 7월에 진행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구청중 일부는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자는 연락조차 아예 오지 않았고(은평구, 강서구 등), ▲조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조사를 시행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고, ▲복지부의 지침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하루에 4~7개의 시설을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정부지침에 대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또한 민관합동조사 전에 진행했어야 할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기초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잘 몰랐다'며 시설의 위치도 모르는 시군구도 있었다.

○ 또 A구청의 경우는 조사일정까지 협의하는 등 조사준비를 하고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민간위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되겠다고 제안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사업비가 없어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조사일정을 취소한 곳도 있었다.

2) 시군구 추천 민간위원들의 문제

○ 이번 민관합동조사는 시군구 담당자, 시군구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복지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중에는 ▲자신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조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위원, ▲대충 이야기만 들었다며 미신고시설을 왜 조사하는지 묻는 민간위원, ▲조사내용과 기초자료 등을 조사 나가기 직전에 처음 봤다는 민간위원 등 민관합동조사의 내용과 취지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 또한, 구청 추천 민간위원 중에는 생활시설 운영자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래 민간위원들의 주요한 조사 목적인 '생활인 면접을 통한 인권실태 파악'이라는 목적보다는 운영자측면의 이해를 더 하기 쉬운 입장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객관적 조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또, 조사를 나간 구청 추천 민간위원 중 생활인들을 아예 만나지 않거나, 만나도 한 두 사람 등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위원도 있어 성실한 조사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 조사여건

○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과 시간에 있어서도 하루에 4~7번의 조사를 요구하는 시군구도 있어, 후에 하루에 2개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조정하였다. 또한 1일 2개 시설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조사시간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아 생활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또, 생활인들과 면접하는 공간에 시설장과 직원 등이 불쑥 끼어들거나 계속 문을 열어보는 등 생활인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지 않고, 면접하는 동안 옆에 지키고 서있는 등 조사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4. 결론

첫째, 복지부의 지침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현재 시점에서 신고전환하지 않은 모든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인권침해 및 생활실태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조사내용에 따라 시설폐쇄 및 전원조치등을 이행하고 경고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도감독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이번 민관합동조사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생활인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상시적인 민관합동의 감독기구 등을 두어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시설운영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생활인들의 입퇴소의 자유 등 기본권이 박탈된 시설, 수급권을 일괄관리하는 시설,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일상적인 방임상태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여타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외부에 자유롭게 사실을 알리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체계가 필요하다.

토론

토론 1.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토론 2. 안진 (광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토론 2.

안 진 (광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별첨 자료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
(2005. 5. 복지자원정책과)



목 차

I. 그간의 경과 및 한계점.....	3
II. 미신고시설의 증가추세 및 원인.....	3
III. 향후 지원·관리대책의 기본방향.....	4
1. 지원시설 관리.....	4
2. 미지원시설 관리.....	5
3. 신규발생 미신고시설 관리.....	6
IV. 미전환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7
1. 개선명령.....	8
2. 민관합동 실태조사.....	8
3. 행정처분대상과 존치대상의 분류.....	9
4. 행정처분대상 시설에 대한 청문 및 심의.....	10
5. 폐쇄명령 및 후속조치.....	12
V. 적극적인 정책홍보 등.....	14
VI. 향후 추진일정.....	15
<붙임 1 : 분류 참고표>.....	16
<붙임 2 : 청문 절차(예시)>.....	19
<붙임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0
<붙임 4 : 인권상태 현황 점검표>.....	21
< 서식 1 :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서 >	
< 서식 2 :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표 >	
< 서식 3 : 개선명령 이행권고문 >	
< 서식 4 : 권고안 이행계획서 >	
< 서식 5 : 신고시설 전환계획서 >	
< 서식 6 : 사회복지시설 폐쇄명령서 >	

I 그간의 경과 및 한계점

□ 그간의 경과

- 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 관리대책 수립·시행('02. 6)
- 신고제 도입, 개인의 시설설립허용, 신고요건 완화 등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복권기금, 삼성기금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건부신고시설 및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04. 7 ~)
- ※ '05년까지 미신고복지시설 545개소에 840억 지원예정
- 복지부, 시민단체, 교수 등 민관합동의 시설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미신고시설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논의중('04. 7 ~)
- '05년부터 시설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 한계점

- 신고시설 전환 후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은 없고 법상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등 신고시설 전환의 인센티브가 부족함
-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신고기준,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복권기금, 민간재원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역주민의 Nimby현상, 지방의회의 반대,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인해 건물 신·증축 등 기능보강이 어려움

II 미신고시설 증가추세 및 원인

□ 미신고시설 증가추세

- 지자체를 통해 미신고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05. 1 현재 1,209개소, 21,8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 ※ '03. 1 이후 79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244개소가 신규발생

구 분		2003.1	2004. 1	2004. 4	2005. 1	증감 ('03. 1기준)
총계	개소(수)	1,044	1,074	1,094	1,209	+ 165
	생활자(명)	17,893	19,991	20,245	21,896	+ 4,003
조건부신고 한 시설	개소(수)	962	928	902	883	- 79
	생활자(명)	16,232	17,309	16,982	17,448	+ 1,216
조건부신고를 아니한 시설	개소(수)	82	146	194	326	+ 244
	생활자(명)	1,661	2,682	3,263	4,448	+ 2,787

※ 법인 및 개인운영신고시설('05. 1) : 1,213개소 86,116명

□ 미신고시설 증가원인

- 수급자 보호 위주의 시설정책으로 인해 입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은 미신고복지시설을 이용
- 기존 시설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유리된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는 생계수단으로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
- ※ 매월 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34만원, 실비입소자는 30~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음

III 향후 지원 · 관리대책의 기본방향

1. 지원시설 관리

가. 복권기금 지원시설(499개소)

- '04, '05년 복권기금 지원시설은 조속히 시설장과 협의하여 공통계약서 체결, 시공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신·증축 공사, 매매계약, 장비지원 등 지원사업이 완료된 즉시 시군구에서 신고접수

⇒ 지원하더라도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사업 완료후에도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계약서에 의거 환수하고 해당시설 및 시설장은 의법조

나. 민간재원 지원시설(55개소)

- 1) 삼성기금(행복동지사업) 지원시설(43개소)에 대해서는 완공후 시설별로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접수
⇒ 신고시설 전환 거부시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할 예정
- 2) 하나은행 지원시설(12개소)은 신고시설 전환여부를 확인하고 미전환시 전환을 유도하고 거부시에는 지원금 회수후 의법조치

2. 미지원시설 관리

가. 신고요건을 충족한 시설

- 1) 현재 신고요건에 적합한 시설은 유예기간 종료(7월 31일)전까지 최대한 신고시설 전환유도
⇒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것
※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중('06년 1월 시행예정)
- 2) 행정간섭, 종교적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시설은 향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을 홍보하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적극 유도

나.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시설

- 1)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실태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처리방안 결정
- 2) 생활자 인권 및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되, 생활자 전원조치가 완전하게 완료된 후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쇄

☞ 세부적인 사항은 IV. 미전환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참조

3. 신규발생 미신고시설 관리

▶ 2005년 7월 31일 이후에 신규로 발생 및 발견하는 미신고복지시설은 생활자가 입소 또는 증가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바람

○ 조치요령

- 1) 읍·면·동, 통·리·반장, 복지위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발생시설 또는 미신고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

※ 미신고시설 발생 또는 발견시 시군구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통리반장, 복지위원 등에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2) 시·군·구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접수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신고시설 전환 가능성 확인 및 전환유도

가)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미신고시설은 적극적으로 신고시설 전환유도

→ 신고시설로 전환하더라도 행정적인 간섭이 없으며 미신고시설 운영이 불법임을 최대한 홍보 설득

- 나) 신고시설 전환이 불가능한 미신고시설은 설립초기에 시설장을 설득하여 시설 이전, 신증축 등 유도

- 다) 신고시설 전환을 거부하거나 시설이전, 신증축 등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선명령 → 시설폐쇄"의 행정처분 실시
(시설장 고발여부는 시군구청장 판단하에 결정)

IV 미전환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 행정처분 절차 개요('05 ~ '06)

행정처분 절차	일자	주체 및 대상
가. 개선명령		시군구 → 개별시설
△ 개선명령서 발부완료	'05. 8. 31까지	○ 미전환 미신고복지시설
△ 개선명령기간	'05. 9. 1 ~ '06. 2. 28	
↓		
나. 민관합동 실태조사		조사팀 → 개별시설
△ 합동조사팀 구성완료	'05. 9. 1까지	시군구에서 구성
△ 실태조사 기간	'05. 9. 1 ~ '05. 11. 1	
↓		
다. 행정처분대상 시설분류	'06. 3. 31까지	시군구에서 분류
↓		
라. 청문 및 심사		시설장 ↔ 위원회
△ 위원회 구성완료	'06. 4. 1까지	시군구에서 구성
△ 청문실시	'06. 4. 1 ~ '06. 5. 1	시군구에서 실시
△ 폐쇄여부 최종결정	'06. 5. 31까지	시군구청장이 결정
↓		
마. 시설폐쇄		시군구 → 개별시설
△ 폐쇄명령서 발부완료	'06. 6. 30까지	시군구 → 개별시설
△ 자진전원 실시	06. 7. 1 ~ 06. 9. 30	시설장
△ 전원조치 실시	'06. 10. 1 ~	시군구

1. 개선명령

○ 미전환시설(요건을 완비하였으나 신고하지 않는 시설 포함)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명령서(서식 1) 발부

▷ 개선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선명령권자 및 개선명령대상자
- 개선명령의 법적근거
- 개선명령의 내용(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개선명령기간(6개월)

○ 개선명령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의무
-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 시설종별로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도 참조할 것

○ 개선명령서 발부 완료일 : 2005년 8월 31일까지

○ 개선명령기간 : '05. 9. 1 ~ '06. 2. 28(6개월)

○ 참고사항

- 신고요건을 기충족한 시설은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 개선명령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달수단(등기우편, 내용증명, 인편 등)으로 개선명령서를 발부할 것
- 개선명령의 내용은 개선명령서만으로도 미완비된 신고요건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04년, '05년 복권기금사업, 행복복지사업(삼성)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지 말 것"

2. 민관합동 실태조사

○ 시·군·구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내 미전환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민관합동조사팀의 구성 및 역할

- 시민단체, 시설관련단체, 지역주민, 복지위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7인이내로 구성(공무원 반드시 포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시군구는 실무협의체를 민관합동조사팀으로 적극 활용할 것
- 관내 미전환시설을 직접방문하여 시설실태조사, 시설장 및 생활자 면담,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표(서식 2) 작성
- 시설 현실태(신고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시설장에게 설명하고 신고시설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문서(서식3)로 권고하고 권고에 대한 시설장의 이행계획서(서식4)를 제출토록 할 것

○ 민관합동 실태조사팀 활동시기

▷ '05. 9. 1 ~ '05. 11. 1(2개월)

○ 참고사항(붙임 1 : 분류참고표(16P) 참조)

- 실태조사 대상시설이 다수 소재하여 독자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시·군·구는 시도차원에서 인력지원방안 모색
- 생활자 생활실태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대상시설로 분류하도록 유도할 것
- 실태조사표와 이행계획서는 향후 행정처분의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신중을 기해 작성하도록 주지시킬 것 등

3. 행정처분대상과 존치대상의 분류

※ 실태조사표, 권고문, 시설장의 이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분류

○ 행정처분대상시설(붙임 1 : 분류참고표 참조)

- 1) 실태조사 결과 종합의견에서 "점진적폐쇄"와 "즉시폐쇄"로 분류된 시설
- 2) "양호", "존치필요"로 분류된 시설 중 실태조사팀의 권고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한 시설
→ 권고안에 대해 해당 시설장이 이행계획서(서식4, 28P)를 미제출할 경우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 3) "양호", "존치필요"로 분류된 시설로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시설 중 이행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 실태조사팀의 의견, 시설의 재정여건, 시설장의 성향, 이행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1차 관리주체인 해당 시·군·구청장이 최종 판단하되, 생활자 생활실태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은 가능한 존치대상시설로 분류

○ 존치대상시설

- 폐쇄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존치대상시설은 실태조사결과, 이행계획안 등을 참고한 후, 시·군·구청장이 시설장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시설로 전환

※ 전환시기,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전환계획서(서식5)를 작성할 것

○ 행정처분, 존치대상시설 분류 완료 시기 : '06. 3. 31

4. 행정처분대상 시설에 대한 청문 및 심의

- 청문 및 심사절차를 수행할 시군구차원 위원회 구성
- 청문 및 심사대상 : 폐쇄대상으로 분류된 시설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미구성인 시·군·구는 기존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 활용
(실태조사팀에 참여한 위원이 청문 및 심사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7조2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시설폐쇄 등) 등에 대한 심의 및 건의 기능 수행

· 위원회의 기능

- 폐쇄대상시설에 대한 청문
- 시설폐쇄여부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를 시·군·구청장에 건의

· 위원회 운영시기 : '06. 4. 1 ~ '06. 5. 31

→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를 것

▷ 행정처분대상 시설에 대한 청문(붙임 2 : 청문절차 참조)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2조항
- 대상 : 시군구에서 폐쇄대상시설로 분류된 시설

▷ 위원회의 심의 및 폐쇄여부 최종 결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7조의 2
- 대상 : 청문절차를 완료한 폐쇄대상시설

1) 관련자료 검토

· 실태조사팀의 실태조사표(서식 2), 권고안(서식 3), 시설장의 이행계획서(서식 4), 청문조서 등 청문관련 자료, 시설장 제출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시설의 폐쇄여부를 심의하고 위원회 최종의견을 결정

※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를 것

· 심사완료시기 : '06. 5. 31

3) 시·군·구청장에 건의

· 최종의견을 “폐쇄결정”, “폐쇄유보”로 시군구청장에게 건의

4) 폐쇄여부 최종결정

· 해당 시군구청장이 위원회 건의내용의 수용여부를 최종결정하되, 가능한 폐쇄시설이 전체 미신고시설의 10%가 넘지 않도록 유의

수용시	“폐쇄결정”시설	⇒ 폐쇄명령서 발부
	“폐쇄유보”시설	⇒ 존치대상시설과 동일하게 신고시설 전환
수용불가 시	“폐쇄결정”시설	⇒ 재심의요구 후 위원회가 동일하게 결정 건의시 <u>시군구청장이 위원회 재심의 결과 수용여부 최종결정</u>
	“폐쇄유보”시설	

5. 폐쇄명령 및 후속조치

1) 폐쇄명령서 발부

○ 폐쇄대상으로 확정된 시설은 폐쇄명령서(서식6)를 발부

▷ 폐쇄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폐쇄명령권자 및 폐쇄명령대상자
- 폐쇄명령의 법적근거
- 폐쇄명령의 이유(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폐쇄명령의 내용(구체적으로 명시)
 - 생활자 전원관련 후속조치(법 40조 제2항 참조)
 - 사회복지사업 최종 종료일 등
- 이행완료일 명시 등

○ 폐쇄명령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의무
-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 폐쇄명령일자는 “폐쇄명령서 발부 완료일자”로 하되, 폐쇄명령 이행완료일은 각 시군구가 관내 여유시설, 생활자 전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폐쇄명령서 발부 완료시기 : '06. 6. 30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폐쇄시, 1년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등 향후 다양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폐쇄명령서 발부 전 시설장을 최대한 설득하여 동법 38조의 자진폐쇄의 형식으로 시설을 폐쇄하도록 유도할 것

2) 생활자 전원조치 등 후속조치

○ 생활자 자진 전원조치 기간

▷ '06. 7. 1 ~ '06. 9. 31(3개월)

⇒ 상기기간내에 전원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협조하여 전원조치 실시

○ 자진전원조치 기간내 전원조치 시설

- 시설장이 자발적으로 생활자를 귀가 또는 전원조치를 하는 시설은 귀가 또는 전원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유시설 소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자진전원조치 기간내 전원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 생활자 및 보호자 개별면담 후 전원조치 실시

- 귀가를 원하는 경우 : 귀가조치
- 귀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 : 법인시설 중 무료시설로 전원하되, 생활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선택토록 함

·비수급자 : 법인시설 중 실비 및 유료시설 또는 개인운영신고시설(전환이 확실한 미신고시설 포함)로 전원하되, 생활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선택토록 함

☞ 이용료가 비슷한 시설로 안내할 것

⇒ 아동시설은 학기중에는 절대로 시설폐쇄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시설아동 전체를 동일한 시설로 전원케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함

3) 시설폐쇄 및 전원조치시 주의사항

○ 생활자에 대한 전원조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내로 전원조치 추진

- 동일 시·군·구내 시설부족으로 전원이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구의 최인접 시설을 소개하고 생활자 및 보호자가 선택케 함(시·도 차원에서 조정)

- 동일 시·도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여유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생활자 전원을 유보하고 “타 시도 시설로의 전원”은 생활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 사회복지시설 현·정원('05. 1) : 정원(103,903명), 현원(86,116명)

○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을 고려하여 “즉시폐쇄” → “점진적 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전원조치를 실시하고 시·도내 법인시설의 정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수용할 것

▷ 시설장 및 생활자(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 강제적 전원은 법적·현실적 무리가 있으므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장 및 생활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원이 무리없이 이뤄지도록 함

⇒ 계속적으로 전원을 거부하는 시설은 생활자 및 보호자를 설득하여 인근시설로 단계적인 전원을 실시하여 자연적으로 시설이 폐쇄되도록 함

⇒ 인권침해시설,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시설, 붕괴위험 시설 등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조성한 후 시설장 고발 및 전원조치 실시

V 적극적인 정책홍보

□ 정책대상자별 맞춤형 정책홍보 실시

○ 미신고복지시설 시설장

- 정부정책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임을 지속적으로 홍보

※ '04년 하반기 시도별로 전체 미신고시설장을 대상으로 정책홍보회를 개최하였으며 '05년 7월 이전 별도의 정책홍보자료 배포 예정

-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책홍보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www.bokjisisul.or.kr)하여 운영(5월 기 오픈)

- 기전환한 미신고시설장 및 미신고시설 관련단체를 실태조사 등에 적극 참여시켜 정책추진에 협조를 구함
- * 미신고시설 관련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5월말 개최

○ 대국민홍보

-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6월예정)에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부정적 이슈화를 사전에 방지
- * 지자체의 경우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동행하여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홍보
- * 시설폐쇄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강제 전원조치 등은 자제

VI 향후 추진일정

□ 지원 및 관리대책 추진

- '05년 복권기금 배분 : '05. 6 ~
- 유예기간 종료 : '05. 7. 31
- 민관합동 실태조사 : '05. 9 ~ '05. 10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 : '06. 1
- 지원대상시설 추가 발굴 : '05. 12 ~ '06. 3
- 최종 폐쇄대상시설 폐쇄조치 실시 : '06. 7 ~
- * 폐쇄는 반드시 생활자 전원이 완료된 후 실시

□ 홍보 및 교육실시

- 미신고시설 관련 단체 대표자에 대한 홍보 : '05. 5
- * 미신고시설장 협의체뿐만 아니라 생활자 인권문제를 주장하는 단체까지 포함시켜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 '05. 6
-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 실시 : '05. 6
- *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은 폐쇄가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선의의 시설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유도
- 지자체를 통한 미신고시설장에 대한 홍보교육 : '05. 6 ~
- * 복지부와 시군구 공동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자료는 우리부에서 제작 배포 예정

< 붙임 1 : 분류 참고표 >

○ 단계별 분류(전단계 통과 후 후단계 적용)

단계	구분	준치	폐쇄
1단계	일반 생활실태(A)	1. 양호 2. 보통	3. 열악(점진적 전원 필요) 4. 극히열악(즉시전원 필요)
2단계	인권관련 생활실태(B)	1. 양호 2. 보통 3. 경미한 위반	4. 중대한 위반 (즉시 전원조치)
3단계	시설설비요건(C)	1. 현 상태로 완비 2. 정원감축 필요 3. 기능보강 필요	4. 즉시조치 필요
4단계	시설장 전환의지(D)	1. 전환의지 강함 2. 전환의지 보통 3. 법제도 개선시 전환	4. 어떠한 경우에도 전환거부
5단계	종사자요건(E)	1. 완비 2. 1-2명 충원 필요 3. 3-4명 충원 필요	4. 5명이상 충원 필요
6단계	시설장자격(F)	1. 취득 2. 취득확실 3. 자발적 취득예정 4. 교육과정 개설시 취득의사 있음	5. 취득의사 전혀없음
7단계	타법령위반(G)	1. 준수 2. 위반	
8단계	B3, C3, F3, F4, G2 시설중		1. 시군구청장(실태조사팀)의 권고안 거부, 미이행시 2. 이행계획서의 실행가능성이 없을 경우

○ 분류기준의 내용

구분	분류기준 내용
일반 생활실태(A)	1. 양호 : 신고시설 수준(이상)의 생활 2. 보통 :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음 3. 열악(점진적 전원 필요) : 의식주상태, 안전 등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점진적 전원 필요 4. 극히열악(즉시전원 필요) : 의식주상태,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인권관련 생활실태(B) <붙임 4> 인권점검표 참조	1. 양호 : 인권보장 수준이 법인 시설 수준으로 양호 2. 보통 : 인권유린 관련 특이 사항 없음 3. 경미한 위반 : 생활자 특성상 일부 사항을 제한하는 정도로 시정 가능하고 향후 재발 위험이 없는 경우 4. 중대한 위반 : 인권 관련 문제사항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이며 시정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설설비요건(C)	1. 현 상태로 완비 : 현 상태로 시설의 법적기준 충족 2. 정원감축 필요 : 현원의 10%내외를 감축하면 법적기준 충족 3. 기능보강 필요 ①현원의 10%이상 감축이 필요 ②조리실, 물리치료실 등 시설설비 증축 필요 ③약간의 안전보강 필요 4. 즉시조치 필요 : 비닐하우스, 판자촌, 붕괴위험건물 등 생활자 인 권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시설
시설장 전환의지(D)	1. 전환의지 강함 : 지원여부에 상관없이 전환의지 있음 2. 전환의지 보통 : 지원여부에 따라서 전환 3. 법·제도 개선시 전환 : 종교적신념,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입퇴소 절차, 보고절차 등을 간소화하면 전환 4. 어떠한 경우에도 전환거부
종사자요건(E)	1. 완비 2. 1-2명 충원 필요 3. 3-4명 충원 필요 4. 5명이상 충원 필요 →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2005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시설장자격(F)	1. 취득 2. 취득확실 : 현재 양성과정, 대학교 등에 재학중 3. 자발적 취득예정 ①'06년이내에 자발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②'06년이내 시설장을 고용하려는 경우 4. 교육과정 개설시 취득 : 미신고시설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만 취득의사 있음 5. 취득의사 전혀없음
타법령위반(G)	1. 준수 2. 위반
B3, C3, D4, F3, F4, G2 시설중	1. 시군구청장(실태조사팀)의 권고안 거부 또는 미이행 시 ① 전환계획서 시한내에 권고안 이행을 거부 또는 미이행 시 ②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또는 전환계획서 작성 거부 시 2. 이행계획서의 실행가능성이 없을 경우

○ 세부처리방안

구분	분류	세부처리방안
A	1, 2	B단계로
	3	전원계획 수립 후 점진적 전원 및 폐쇄
	4	전원계획 수립 후 전원 및 폐쇄
B	1, 2	C단계로
	3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으며 사후 확인후 문제 해소되면 C단계로
	4	전원계획 수립 후 전원 및 폐쇄
C	1	D단계로
	2	시설장과 협의하여 초과인원 전원계획 수립 후 D단계로
	3	시설장과 협의하여 비용부담, 증개축 시기 등 기능보강계획 수립 후 D단계로
	4	전원조치 계획 수립 후 전원 및 폐쇄
D	1, 2	E단계로
	3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설득한 후 E단계로
	4	최대한 설득하되 지속적 불응시 전원계획 수립 후 전원 및 폐쇄
E	1	F단계로
	2, 3	시설장과 협의하여 충원계획 수립후 F단계로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등 인력지원방안 모색)
	4	지속적 설득하여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유도하되, 지속적으로 불응시 점진적 전원조치
F	1, 2	G단계로
	3	'06년내에 대학입학 등에 대한 시설장 확약을 받은 후 G단계로
	4	자발적으로 취득하도록 설득하되,
	5	자발취득, 시설장 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지속적으로 불응시에는 점진적 전원조치
G	1	신고시설로 전환
	2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환계획서 수립 (시설신고요건 충족시 타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폐쇄하지 말 것)
B3, C4, E3, E4, F2 시설중	1. 권고안 거부 또는 미이행 시	시설장에게 이행계획서, 전환계획서 등의 제출을 최대한 요구하되 지속적으로 거부시에는 전원조치후 시설폐쇄
	2. 실행가능성이 없을 경우	시설장과 정원감축 등 현실적인 방안을 협의하되, 시설장이 실현가능성 없는 전환계획을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전원조치 후 시설폐쇄

< 붙임 2 : 청문 절차(예시) >

1) 청문서 발부

- 청문날짜를 확정된 후 폐쇄대상시설에 최소 청문 10일전에 도달하도록 청문서 (행정절차법 참조) 발송
 - ※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발송하고 발송후에도 반드시 유선 등을 통해 청문참석을 독려할 것

2) 청문실시

- 청문주제자의 선정은 행정절차법 제28조 등 참조하되, 가능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임명할 것
- 청문은 공개하고 1회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연장가능
- 1일 청문이 가능한 시설수를 산정해서 병합 진행가능
- 청문주제자는 시설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행정절차법 제33조를 참고하여 실시
- 청문주제자는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 불참한 시설장은 계속 참석을 독려하되,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라도 청문절차는 반드시 개시하고 청문조서 등을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종결할 것

3) 청문의 종결

- 청문주제자는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 종결
 -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계속 의견제출 및 청문참석을 거부할 경우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결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 청문 종결 가능
- 청문종결 시 청문주제자는 청문조서, 의견서 그밖의 관계서류 등을 시군구청장에 제출할 것

4) 청문결과의 반영

- 시군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주제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

5) 청문의 재개

- 시·군·구청장은 청문종결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음

6) 문서열람 및 비밀유지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종결시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실태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요청 가능
 -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 행정절차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 참조
- 청문을 통해 알게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또는 타목적 사용금지
 - ⇒ 청문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은 행정절차법상 청문관련 제 조항을 “반드시” 참조할 것

< 붙임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 ☞ 미신고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개인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령을 적용하지 말고 아래의 조항을 적용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입퇴소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방향

- ▶ 법 34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생활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모부자, 부랑인)중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 추진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방향

- ▶ 법 제34조 제6항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입퇴소기준 및 절차 ⇒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안내” 참조

< 서식 1 > 시군구 작성후 시설장에 송달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서(예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수급자수			명		
행정처분의 종류	○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내용(예시)	○ 시설설비 기준 (기준 충족 : ○, 미약 : △, 없음 : X)								
	구분	거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설치현황								
처분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 : 사회복지시설 신고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4호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가지침('04.6)에 의거하여 유예조치 중인 귀 미신고시설은 2004년 12월 31일로 유예조치가 종료하였으니 시설장은 아래일까지 개선필요 사항을 구비하시어 신고시설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개선명령 이행완료일	2005년 8월 17일								
상기일까지 개선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서식 2 > 실태조사팀 작성 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표>

1. 시설일반현황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설치자 (설치단체)	* 법인은 법인명 작성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명 ○ 실비생활자(40만원 미만납부) : 명 ○ 실비생활자(40만원 초과납부) : 명			
생활자구분	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자	부랑인	정신질환자	기타
시설이용료 납부유형	수급자						
	실비						
	유료						

* 실비생활자는 월 40만원 미만 납부자, 유료는 월 40만원 이상 납부자

2.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조사

시설 설비 기준 충족 여부 조사 내용

		필요한 설비 현황						
		* "200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장 생활시설별 설비기준 참조						
구분	거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구비현황								

* 시설 규모별로 규정된 설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구비현황은 "충족", "미약", "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

○ 현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전환 가능성

1. 타 법령 준수여부

* 개발제한구역·상수도보호구역등 여부,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

2. 신고요건 충족여부(개별 시설법령 참조)

* 정원감축으로만 요건충족이 가능한지, 증개축, 신축등 기능보강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등

○ 건축물 및 토지 소유 관계 (시설장 소유, 임차, 무료임대 등)

○ 시설 건축물의 안전상태 (건물노후화, 화재위험, 전기·가스 설비 상태)

○ 현 시설이 신고시설 전환 불가능시 대처방안 (신축, 이전 매입, 증개축 등)

○ 법적 설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조달 방법

- 소요비용 :
- 재원조달방법 :

□ 시설장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조사 내용

* 미취득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계획 또는 자격자를 시설장으로 고용하는 방안 등

□ 종사자 배치기준 충족 여부 조사 내용

- 배치필요 종사자 인원 : 명
- 현재 종사자 인원 : 명
- 추가 종사자 배치 필요시 인력 조달 방안 :

참조) ◎ 개인운영시설의 종사자 배치 유예사항

시설규모	5인미만	6-10인미만	10-20인미만	20-30인미만	30-50인미만	50인 이상
종사자수	1명	2명	3명	4명	6명	법정요건적용

→ 50인이상 시설도 무료 및 실비형태로 운영된다고 시군구청장 판단시 2명까지 유예가능

3. 시설 운영 현황 조사

□ 시설 생활자 보호 상태 (생활자 면담 후 작성)

○ 생활자 상해·폭행·유기·학대·감금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생활자 의식주 상태의 열악성 여부

○ 생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제한 또는 강요 사항 유무 여부

* 통신제한, 오락금지, 종교행위강요, 입출입 통제, 강제취침, 기상 등

○ 시설 생활자의 만족도 여부 (실태조사팀이 관찰한 바를 작성)

□ 시설 운영비 조달 사항 조사 내용

(월평균으로 작성, 단위 : 천원)

월평균 수입금 계	시설장자부담	수급자급여중 시설운영비부분	실비·유료 생활자 이용료	후원금(현금)	정부지원금	기타

□ 시설 회계관리운영 사항 조사 내용

- 회계 책임자 지정여부 :
- 회계장부 사용여부 :
- 회계장부의 정확성 여부 :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여부 :
- 기타 회계관련 참고사항 :

□ 기타 시설 운영관련 사항

- 지역주민과의 관계 :
- 시설내에서 근로활동이 있는 경우 생활자 임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 :
- 기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팀의 의견

4. 시설장(또는 설립자)의 신고시설 전환 의지

□ 시설장의 신고시설로 전환의지

* 전환의지가 없을 경우 구체적이 이유를 서술 예) 정부 간섭에 대한 거부감

시설 운영 동기

○

시설장의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 및 준비사항

○

5. 실태조사자 종합의견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할 것)

구분	양호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환의지	<input type="checkbox"/> 강함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규제완화시 전환	<input type="checkbox"/> 거부
시설설비요건	<input type="checkbox"/> 완비	<input type="checkbox"/> 정원감축필요	<input type="checkbox"/> 기능보강필요	<input type="checkbox"/> 즉시조치 필요
종사자요건	<input type="checkbox"/> 완비	<input type="checkbox"/> 1-2명 충원필요	<input type="checkbox"/> 3-4명 충원필요	<input type="checkbox"/> 5명이상 충원필요
시설장 자격	<input type="checkbox"/> 취득	<input type="checkbox"/> 취득확실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	<input type="checkbox"/> 취득의사없음
타법령위반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위반		
생활실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점진적 전원필요	<input type="checkbox"/> 즉시전원필요
재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즉시조치필요
지역여론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매우 열악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존치필요	<input type="checkbox"/> 점진적 폐쇄	<input type="checkbox"/> 즉시 폐쇄

상기와 같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5.

조사자 현 황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3 > 시군구 작성후 시설장에게 송달

개선명령 이행 권고문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종사자 수	명
시설의 현상황 (예시)	<input type="checkbox"/> 시설설비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자격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input type="checkbox"/> 타법령 위반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권고사항 (예시)	<input type="checkbox"/> 생활자 수에 비해 거실의 면적이 작으므로 현 생활자 중 3명을 귀가 또는 전원조치하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양성과정 등을 통해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1명을 고용하기 바람		
상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시어 계획안 제출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제출일	2005년 8월 17일		
상기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서식 4 > 시설장 작성후 시군구청장에게 송달

권고안 이행계획서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종사자 수	명
시설의 현상황 (예시)	<input type="checkbox"/> 시설설비 : ○○㎡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자격 : 취득예정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 1명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 양호 <input type="checkbox"/> 타법령 위반관련 : 준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없음		
권고사항 (예시)	<input type="checkbox"/> 생활자 수에 비해 거실의 면적이 작으므로 현 생활자 중 3명을 귀가 또는 전원조치하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양성과정 등을 통해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1명을 고용하기 바람		
이행계획 (예시)	<input type="checkbox"/> 05. 7. 26. 까지 생활자 3명을 ○○시설로 전원조치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05년 하반기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사양성과정에 입소 <input type="checkbox"/> 05. 4. 21일 종사자 1명(김중사 주민번호 ○○)을 고용하였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5. 시설장 ()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5 > 시설장과 시군구청장 공동작성

신고시설 전환계획서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종사자 수	명
전환확약 일자	2005. 12. 31		
시설의 현상황			
전환관련 합의내용			
상기 전환일자 ()년 ()월 ()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합의합니다. 2005. 시설장 () 인 () 시군구청장 인			

사회복지시설 폐쇄명령서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수급자수	명
처분의 종류	○ 시설폐쇄		
처분의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처분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처분의 내용 (예시)	○○년 ○월 ○일까지 사회복지사업을 종료할 것 ○○년 ○월 ○일까지 생활자를 귀가 또는 타시설로 전원시킬 것		
이행완료일	○○년 ○월 ○일 (해당 시군구 여유시설 현황등을 고려하여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 시설 에 대해 폐쇄를 명합니다.			
2005.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신고시설 전환계획서			
시설명			
시설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모부자 <input type="checkbox"/> 부랑인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소재지			
시설장명		시설장 주민등록번호	
생활자수	명	종사자 수	명
전환확약 일자	2005. 12. 31		
시설의 현상황			
전환관련 합의내용			
상기 전환일자 ()년 ()월 ()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합의합니다.			
2005. . . 시설장 () 인			
() 시군구청장 인			

